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1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와 종목을 조정, 정비하여 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별표" 내용을 일부 개정 (안 제2조 제2항)

가.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중

- 국외자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특별진단서, 성별 및 연령 감정서 발급 사항을 삭제
- 건강진단서와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

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신고에 부속의료기관 개설 사항을 추가 등

Ⅲ. 검토의견

○ 종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던 보건소의 수수료 및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지역보건법」이 개정(2004. 12. 30)되고, 동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이 신설(2005. 6. 3)되는 등 보건소 시설·이용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함에 따라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중 각종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와 종목 등 상위 법령과 지침에 불부합한 부분을 조정, 정비하고 기타 부적절한 용어 등 문안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제2항제5호 의료기관개설허가 등에 "부속의료기관"을 추가한 것은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허가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부속의료기관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한 내용이고

- 안 제2조제2항제6호 및 안 제4조제2호는 보건복지부의 구강보건안내지침 및 결핵관리지침(매년 시달)에 따라 관련내용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 별표 "수수료액표"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법령개정으로 불필요한 내용 등을 삭제·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Ⅳ.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2004.12.30, 법률 제7266호)

第14條 (手數料등) ①保健所는 그 施設을 이용한 者, 實驗 또는 檢査를 의뢰한 者 또는 診療를 받은 者로부터 手數料 또는 診療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와 診療費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2005.06.30, 부령 제322호)

제9조의2 (수수료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5. 6.30>

○ **의료법**

第3條 (醫療機關)
②醫療機關의 種別은 綜合病院·病院·齒科病院·韓方病院·療養病院·醫院·齒科醫院·韓醫院 및 助産院으로 나눈다.

第30條 (開設)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니면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없다. 다만, 第1號의 醫療人은 1個所의 醫療機關만을 開設할 수 있으며, 醫師는 綜合病院·

病院·療養病院 또는 醫院을, 齒科醫師는 齒科病院 또는 齒科醫院을, 韓醫師는 韓方病院·療養病院 또는 韓醫院을, 助産師는 助産院만을 開設할 수 있다.

1. 醫師, 齒科醫師, 韓醫師 또는 助産師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院·齒科醫院·韓醫院 또는 助産院을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⑥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이 그 開設場所를 移轉하거나 그 開設에 관한 申告 또는 許可事項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3項 또는 第4項과 같다

第61條 (按摩士)

③이 法중 …… 第30條第2項第1號·第3項·第6項, ……의 規定은 按摩士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醫療人"은 "按摩士"로, "免許"는 "資格"으로, "免許證"은 "資格證"으로, "醫療機關"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該當醫療關係團體의 長"은 "按摩士會長"으로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3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3, 제23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의2의 규정은 부속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종류)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1조 (건강진단비용)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0.7>

제10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第40條 (療養機關) ①療養給與(看護 및 移送을 제외한다)는 다음 各號의 療養機關에서 행한다. 이 경우 保健福祉部長官은 公益 또는 國家施策상 療養機關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醫療機關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機關등은 療養機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醫療法에 의하여 開設된 醫療機關
2. 藥事法에 의하여 登錄된 藥局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地域保健法에 의한 保健所·保健醫療院 및 保健支所
5.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設置된 保健診療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신체검사실시의료기관) ①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8·13, 1994·12·23, 1998·12·31>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천500원을 당해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암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천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2]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그 횟수(제4조관련)

대 상	건강진단 항목	횟 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을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한한다)	1회/년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피부질환을 말한다)	